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2. 5. 2.(월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부서 지역정책과	담당자	·과장 박희민, 사무관 원일웅, 주무관 길선영 ·☎ (044) 201-3669, 3670	
보도일시	2022년 5월 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지방 낙후지역,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

### - 투자선도지구 등 지역개발공모사업 착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,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,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,
  -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·세제·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.
- 투자선도지구는 교통,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산단,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.
  - 국토부는 '15년부터 순창(발효산업), 진도(해양관광), 청주(화장품)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, 올해도 지역특산물,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.

-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,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.
- 작은학교살리기,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는 등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.
-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6.30.(목)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(rdims.lh.or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“지방 낙후지역은 인구유출, 노후한 인프라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”이라며,
  - “이번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등 지방 성장 및 생활거점이 조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원일웅 사무관 또는 길선영 주무관(☎ 044-201-3669, 36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

## 지역개발공모사업 개요

- (개요) 인구,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(70개 시·군)을 대상으로,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·지원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
- (공모 유형) ①지역수요맞춤지원, ②투자선도지구 2가지 유형으로 구분
  - (지역수요)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존 지역주민과 신규 유입 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거점(주거플랫폼) 조성 추진
    - \* (주거플랫폼) 지역이주 수요에 맞춰 “공공임대(LH 등) + 생활인프라(정부지원) + 일자리(지자체 등)”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거점 조성 추진
  - (투자선도)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업단지, 관광단지, 도시개발 등을 위해 정부지원, 민간투자를 집중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

### < 지역개발공모사업 유형 및 내용 >

구분	지역수요맞춤지원 (주거플랫폼)	투자선도지구 (발전촉진형)
주요내용	· (개요)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맞춤 중·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지원 · (유형) 작은학교살리기, 청년창업지원, 일자리연계 등 계획 특화	· (개요) 교통,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성장거점 조성 · (유형) 역세권 복합개발, 지역특화 산업, 관광 등 수요맞춤 계획수립
대상지역	· 성장촉진지역 (70개 시·군)	
선정규모	· 10개소 내외	· 2개소 이내
비고	·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간 선정 개수는 변동 가능	

- (평가 방식)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, 서면·현장·종합평가를 거쳐 최종선정('22.8월)
- (향후일정) 설명회('22.5) → 사업접수(~'22.6) → 평가 및 선정(~'22.8)